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지방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,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심리안정휴가 신설(안 제7조의7제14항 신설)

-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·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.

나.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안 별표 1)

-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.

다.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(안 제7조제1항)

-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,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4. 21. ~ 5. 31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 단서 중 “2년 미만인 경우로서”를 “5년 미만인 경우로서”로,
“2년 미만의”를 “5년 미만의”로, “2일”을 “3일”로 한다.

제7조의7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5조 각 호(제11호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·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상담,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건·사고의 인정 기준,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1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출산	배우자(단태아인 경우)	10
	배우자(다태아인 경우)	15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7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건·사고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	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
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<u>2년 미만인 경우로서</u>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<u>2년 미만의</u>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<u>2일</u> 을 더한다.	(현행과 같음)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~ ⑬ (생략)	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~ ⑬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⑭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5조 각 호(제11호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·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상담,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건·사고의 인정 기준,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</u>

	<u>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8